

CEO Report

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의 과제

김동겸



01 호
2026.03

CEO Report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기업 경영환경은 디지털 전환, ESG 확산, 이해관계자 권리 강화, 규제 고도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리스크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기업의 책임 범위는 재무성과 중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으로 확대되었으며, 내부통제 실패나 감독의무 위반과 같은 관리 과정상의 문제가 경영진 개인의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음. 특히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 경영진의 의사결정 전반이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음

기술혁신 또한 책임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음. AI·데이터 기반 경영의 확산으로 알고리즘 오류, 정보보호 실패, 사이버 침해 등 복합적·비정형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 차원의 감독 책임으로 귀속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이제 기업 리스크는 개별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묻는 책임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는 임원배상책임보험(D&O 보험)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음. 동 보험은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보장이라는 사후적 기능을 넘어, 확대된 책임 환경에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뒷받침하는 핵심 리스크관리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동시에 책임 완화 및 소송 유인 확대 가능성이라는 제도적 긴장도 내재하고 있어, 위험분담과 책임 유인의 균형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국내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상장사 중심 구조로 인해 양적 성장에는 한계가 존재함. 향후 시장은 보장한도 증액, 담보 범위 정교화 등 보장수준 고도화를 중심으로 질적 성장 단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아울러 Long-Tail 특성에 따른 손해 변동성과 보험 사이클 관리가 시장 안정성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음

결국 기업 리스크의 복합화와 경영진 책임의 확대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선택적 비용이 아닌 기업 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전략적 인프라로 재위치시키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상품 고도화와 정책적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임

I

검토배경

-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로 소송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D&O Insurance)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이 업무 수행 중 저지른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인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과실, 태만 등에 기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합의금 등을 보장함

- 국내보다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활성화된 해외의 경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규제 준수에 대한 관심 증대, 소송 위험의 급증, 제도 개편 등을 배경으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왔음
 - 미국은 1967년 회사법에 D&O 보험 조항이 명문화되고, 1960~1970년대 증권집단소송(Class Action)이 급증하면서 시장이 확대되었으며, 일본은 2019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문화되면서 시장 성장이 촉진됨(山越誠寺 2023)
 - 규제 환경의 고도화와 소송 위험의 증대에 따라 기업들은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보호 장치로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하고 있음
 - 최근에는 기업들이 주주 행동주의의 확산, 직원 소송 증가, ESG 이슈의 부각 등으로 기업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 세계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VMR(2025)은 전 세계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이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연평균 7.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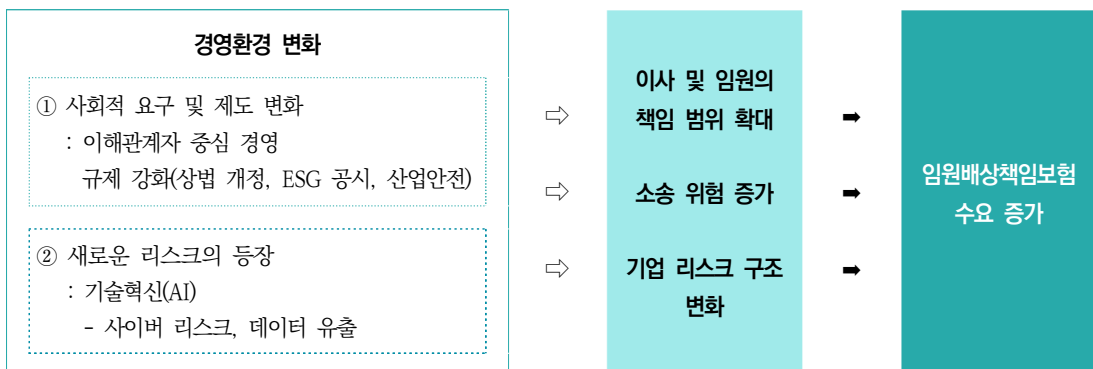
- 본고에서는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둘러싼 기업 환경의 변화와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전망과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먼저, 상법 개정 등 제도 변화와 신종 리스크 확산을 중심으로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가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다음으로, 시장의 질적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책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경영과제와 감독당국의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고찰함

II

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리스크

- 최근 기업 경영환경은 디지털 전환, ESG 확산, 이해관계자 권리 강화 등 구조적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과거와 다른 위험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기업의 책임 범위가 재무성과 중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한 평가 기준도 한층 엄격해지고 있음
 - 또한 규제 강화와 시장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비재무적 관리 실패 역시 경영책임으로 귀결되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기업 차원의 손실을 넘어 경영진 개인의 법적·재무적 책임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업 리스크 역시 기술·규제·평판 요인이 결합된 복합적·비정형 위험으로 전환되고 있음
 - 내부통제 미흡, 공시 실패, 감독의무 위반 등이 이사 및 임원의 책임 판단 대상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경영진은 기업가치 창출과 책임 리스크관리라는 이중적 과제를 부담하고 있음
 - 데이터 보호, AI 활용, ESG 대응 실패 등은 예측이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책임 리스크를 형성하고 있음
- 이처럼 리스크의 성격이 ‘기업의 운영위험’에서 ‘경영진의 책임위험’으로 이동함에 따라, 임원배상책임 보험은 사후보상 수단을 넘어 합리적 경영판단을 뒷받침하는 리스크관리 장치로서의 중요성이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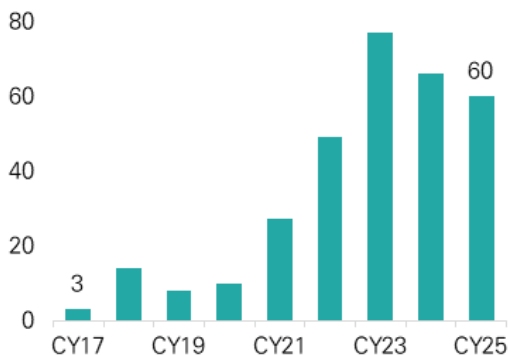
〈그림 II-1〉 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역할



1.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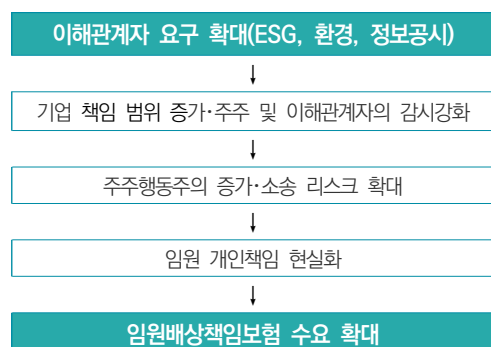
- 과거 기업 경영은 주주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근래에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지속가능경영이 핵심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음
 - 기업 성과는 재무적 지표뿐 아니라 사회적·윤리적 책임 이행 여부에 의해 평가되는 구조로 변화함
- 이러한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를 넘어 규제와 시장의 요구에 의해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 ESG 공시 의무 확대,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확산, 인권·환경 기준 강화 등이 제도화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판 하락, 투자 감소, 규제 제재 등 다양한 경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됨
-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의 확산은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 리스크를 부각시키며 임원의 책임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음
 - ESG 관리 미흡으로 인한 투자자 소송,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경영진 책임 추궁, 데이터 관리 실패와 관련한 감독 책임 위반, 공급망 문제에 대한 연대책임 등이 주요 사례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이사회와 경영진은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넘어, 이해관계자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은 예측하기 어려운 법적 분쟁 가능성을 높여 D&O 보험의 필요성을 증대시킴
 - 책임 범위의 확대와 분쟁의 복잡성 심화로 경영진 개인의 법적·재무적 노출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D&O 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림 II-2〉 국내 행동주의 펀드 캠페인 대상 기업 수
(단위: 개)



자료: Dilligent Market Intelligence(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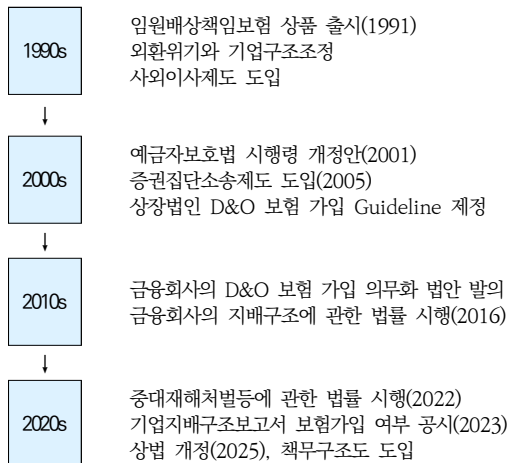
〈그림 II-3〉 임원배상책임보험 수요 확대 경로



2. 규제 강화와 Compliance Risk 증가

- 기업을 둘러싼 규제환경은 사후제재에서 사전예방 및 내부통제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관리와 이사회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 이후, 금융·지배구조 관련 제도 정비가 이어지면서 경영진의 법적 책임이 확대됨
 - 또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기업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핵심 수단으로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 공시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배구조 투명성과의 연계도 강화되는 추세임
- 특히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주주 권리 강화 등을 목표로, 2025년 7월 공포된 상법 개정안은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여,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및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3% Rule) 도입을 통해 이사회 내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으로 이사회 내 독립성을 강화하여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외국계 투기자본이나 행동주의 펀드 등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배임 관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증가함

〈그림 II-4〉 임원배상책임보험 관련 주요 제도 변화



〈그림 II-5〉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②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의결권 제한	③ 상장회사 사외이사 제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제382조의3) :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3% Rule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선임비율 확대 : 이사총수의 1/4 → 1/3 이상
2025년 7월 시행	2026년 7월 시행	2027년 1월 시행
↓ ↓ ↓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강화, 소송 위험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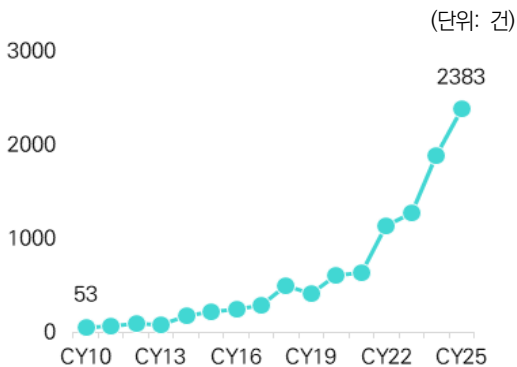
3. 기술혁신과 경영진의 책임: AI

-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기업 리스크가 물리적 사고에서 정보·기술 기반 리스크로 이동하고 있음
 - AI·빅데이터·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경영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발생함
 - 기업의 핵심 자산이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리스크 구조도 함께 변화하고 있음
 - 특히, 인공지능(AI) 도구의 급속한 보편화와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확산에 따라 딥페이크, 허위 정보, 시스템 장애, 사이버보안 침해 등 AI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

- 기술혁신 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리스크는 다양하며, 사고 발생 가능성과 손해 규모의 예측이 어렵고, 책임 소재가 조직과 개인 간에 중첩되는 특징을 보임
 - 데이터 관리 실패는 대규모 손해배상, 규제 제재,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알고리즘 오류 또는 편향된 데이터 활용 피해에 대한 경영진 감독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 해킹·시스템 마비 등은 단순 IT 장애를 넘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실패로 평가됨
 - 신산업 영역에서 법적 기준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책임 리스크가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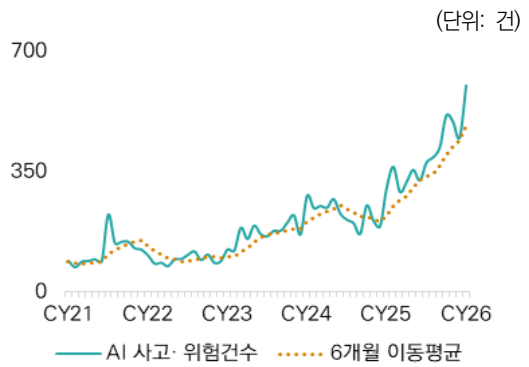
- 기업의 디지털 전략이 이사회 의사결정 사항으로 격상되면서 AI 리스크가 거버넌스 리스크로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법적 책임 노출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 과거에는 기술 실패를 실무부서의 운영 문제로 인식하였으나, 현재는 ‘AI Governance’가 이사회 책임 영역으로 격상되면서 사이버사고·AI 실패·시스템 장애 등이 경영진 배상책임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음

〈그림 II-6〉 국내기업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 (단위: 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각 연호

〈그림 II-7〉 Global 미디어에 보도된 AI 사고·위험 건수 (단위: 건)



주: AI 사고 및 위험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집계함
 자료: OECD(2026)

4. 기업 리스크 구조의 변화: 복합·비정형

- 최근 기업 리스크가 환경·사회·기술·규제 등 다양한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복합적·비정형적 리스크로 변화하면서 과거에 비해 사전 예측과 통제가 어려워짐
 - 과거 기업 경영이 주로 노출되었던 리스크는 매출 감소, 생산설비 사고, 환율 변동 등 발생 원인과 영향이 비교적 명확하여 보험이나 재무적 대비를 통한 관리가 가능하였음
 - 현재는 기업 리스크가 단일 사건이 아니라 경영 전반의 관리 수준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발생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짐
- 현대 기업의 리스크는 단순히 사고 자체보다는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과정'에 책임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
 - 예컨대 정보유출 사고는 과거에는 기술적 장애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내부통제의 적정성, 이사회 감독의무 이행 여부 등까지 함께 검토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이 재무적 요소에서 비재무적 요소로 확장되고 있음
 - ESG 대응 미흡에 따른 투자 위축 및 평판 손상, 안전·환경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사이버보안 실패로 인한 신뢰 상실 등과 같은 리스크관리가 기업 경영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 동 리스크는 재무제표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나,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무엇보다 기업의 조직 차원의 문제가 경영진 개인의 책임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 이사회와 임원은 단순히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넘어 ①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②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 ③ 이해관계자 보호 정책 수립, ④ 합리적 경영판단 근거 확보 등의 의무를 부담함
 - 결국, 기업 리스크는 '회사만의 위험'을 넘어 경영진 개인의 법적·재무적 부담으로 전환되고 있음
- 이와 같은 기업 리스크 구조의 변화는 임원배상책임보험 수요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함
 - 관리 실패 및 감독 책임 관련 분쟁은 발생 가능성과 손해 규모 예측이 어려워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킴
 - 이에 따라 경영진과 이사진에게 확대된 책임 리스크를 재무적으로 완충하고, 경영 의사결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적극 활용하게 됨

III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 운영실태

1. 상품구조

가. 계약형태

-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회사의 이사·임원이 업무와 관련한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인해 손해배상 등 청구가 제기될 경우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통상 회사 차원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임
 - 이사와 임원의 업무상 부당행위에는 부주의, 태만, 과실, 허위진술, 의무위반 등이 포함됨
- 국내 임원배상책임보험은 1991년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과거 AIG 약관을 참고하여 작성된 국문 약관 상품과 영문 약관 상품이 함께 판매되고 있음
 - 국내와 해외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전체적인 보장 범위는 유사하나 세부 보장 범위에서 차이를 보임
 - 형사소송 방어비용의 경우 미국은 보상하나 국내는 보상하지 않으며, 정신적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은 국내에서만 보상함(보험개발원 2025)
 - 미국과 영국 등 해외의 전형적 임원배상책임보험상품은 배상청구 기준에 따라 'Side A(임원배상책임 담보)', 'Side B(회사보상 담보)', 'Side C(회사 담보)'로 칭하는 독립적 보장담보로 구분됨

〈그림 III-1〉 임원배상책임의 보장 구조

보상대상	임원	회사	
해외	Side A 임원에 대해 이루어진 손해배상 청구에 의해 임원이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	Side B 회사가 임원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	Side C 회사에 대한 유가증권 배상청구로 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
국내	보통약관	법인보상담보 특별약관	유가증권 관련 법인담보 특별약관

자료: Institute of Directors(2024); Willis Towers Watson(2020)을 재구성함

- 해외의 경우 청구범위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청구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범위 대한 논란이 존재함(양희석 2024; 김배정 2024)
 - 201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책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음(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 한편,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 보상 여부가 주(州)별로 상이하며, 국내의 경우 보험회사마다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음

나. 보장기준·면책조항·고지의무

-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인정하는 보험사고 기준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 대해 최초로 제기되고 통지된 청구(Claims-made and Reported) 건임
 - 일반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기준이 통상적으로 손해사고 기준(Accident occurrence basis)인 반면,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청구기준(Claims-made basis)을 취함(양희석 2024)
 - 청구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행위 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청구가 이루어진 시기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음
 - 반면, 행위 시 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보험기간 종료 후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함
 - 한편, 청구기준에 따른 불합리한 상황 발생 방지를 위해 약관에 보장하는 보험사고의 개수 제한, 담보 범위의 확장과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양희석 2024; 홍장희·김지정 2020; 홍진희 2007)
- 임원배상책임보험은 다양한 면책조항(Exclusion)을 두고 있음(최병규 1999; 김원기 2000)
 - 대표적으로 고의적 위법행위, 부정행위, 자기거래, 악의적 행위, 증권거래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임
 - 특정 원고와의 분쟁, 합병·인수와 관련된 책임 등 일정 사유에 대해 면책조항을 두기도 함
-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회사의 대표이사 등 계약자는 임원의 부실 경영, 소송 제기 이력, 재무 상태 등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함
 - 임원배상책임보험은 보험계약자를 회사로 하고 피보험자를 사외이사 등을 포함하는 임원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계약이 이루어지며, 이때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이행함
 - 이에 따라 어느 피보험자의 미고지 또는 부실고지 행위가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임원뿐만 아니라 다른 선의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효력이 미치게 됨

2. 가능 및 효과

-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기업지배구조의 통제 강화장치인 동시에 임원·이사진의 책임 약화, 소송 유인 증가, 위험분담 기능을 함께 갖는 다면적인 제도적 특징을 가짐
- 우선,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경영자의 가치창출 경영을 촉진하고 기업통제를 강화하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음(Bhuiyan et al. 2025; Lin et al. 2011)
 - 보험회사는 계약 과정에서 기업의 리스크와 거버넌스를 심사하며 사실상 외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며, 보험료와 보장 조건은 기업의 위험 수준을 반영하여 시장에 정보 신호를 제공하는 기능을 함
 - 역량 있는 외부이사는 희소한 자원으로, 소송 리스크가 클 경우 이사회 참여를 기피할 수 있으나, D&O 보험은 심리적·재무적 보호막을 제공함으로써 우수 인재 유치와 안정적 직무 수행을 유도함
 - D&O 보험은 과도한 법적 책임으로 인한 경영자의 의사결정 위축을 완화하고, 혁신·투자·M&A 등 장기적 가치창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 계약 장치로 기능함
- 반면, 임원배상책임보험이 경영진과 이사진의 책임의식을 약화시키거나 임원배상책임보험 보유 기업에 대한 소송을 증가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음
 - 보험이 존재할 경우 경영진이 소송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게 되어 위험추구·기회주의 행동이 증가할 수 있으며,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일수록 보험을 더 구매하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보험회사가 지급능력이 큰 ‘Deep pocket’으로 인식되어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커질 수 있으며, 임원배상책임보험 존재가 소송 가능성을 높이는 제3자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음
 - 자세한 정보가 공시되는 환경에서 원고가 해당 정보를 인지·오용하여 소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그림 III-2〉 임원배상책임보험 보유에 대한 기대효과와 주요 이론

① 기업지배구조 보완장치	② 효율적 위험 분담	③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④ 소송유인 확대 가능성
Agency Theory Information Hypothesis	Optimal Contracting Theory Behavioral Decision Theory Resource Dependence	Agency Theory Adverse Selection Optimal Contracting	Third-Party Moral Hazard Signaling Theory Information Hypothesis
Baker and Griffith(2007) Boyer and Stern(2014) Core(2000), Griffith(2006) Holmström(1979) O’Sullivan(1997)	Hu and Fang(2022) Kalelkar and Nwaeze(2015) Kaplan and Harrison(1993) Lai and Tai(2019)	Bushman et al.(2001) Donelson et al.(2018) Liao and Li(2017) Lin et al.(2013) Parchomovsky et al.(2022)	Boubakri and Bouslimi(2016) Core(1997) Donelson et al.(2021) Dudley(2019) Weill(2014)

3. 시장구조와 특징

가.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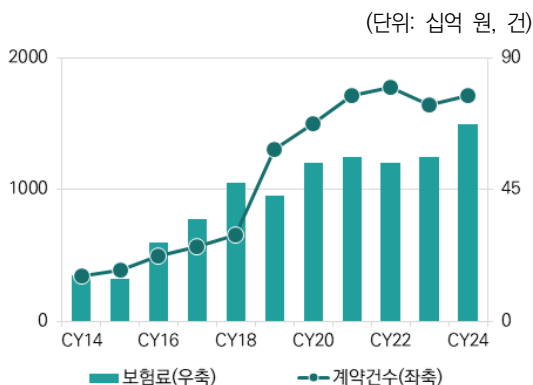
○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규모는 672억 원(2023년 수입보험료 기준)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15.5% 성장함(〈그림 III-3〉 참조)

- 2024년 기준 임원배상책임보험 계약건수는 1,712건으로 2014년 대비 5배가량 증가함
 - 국내에서는 1991년 미국 AIG 사(社)의 임원배상책임보험 영문약관이 보험감독원의 인가를 받아 최초 도입된 이후, 1997년 IMF 외환위기, 2004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제정,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을 거치며 그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음(서정 2007; 강준원 2023)
-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은 72.5%로, 과점에 가까운 시장구조임

○ 임원배상책임보험은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제한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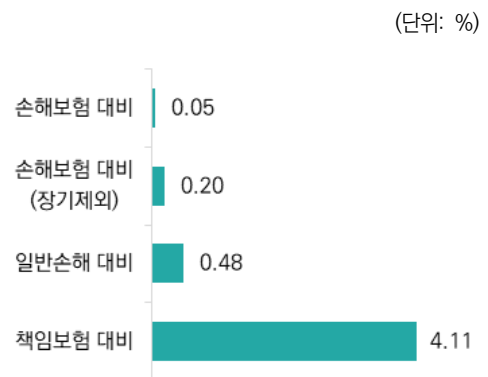
- 2024년 기준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0.48%, 책임보험 시장의 4.11%를 차지함
- 보험가입이 주로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장범위의 확대나 가입 대상의 다변화 없이는 시장규모 확대가 다소 제한적인 상황임
 - 상장사의 임원배상책임 가입률은 2003년 31.6%에 불과하였으나, 2023년 70% 이상으로 증가함(상장회사협의회 2005; 박은빈 2024; 양희석 2024)

〈그림 III-3〉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성장성



주: 수입보험료 기준임
자료: 보험개발원, 각 연호

〈그림 III-4〉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의 규모



주: 수입보험료 기준임
자료: 보험개발원, 각 연호

나. 특징과 한계

○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보장수요가 상이하게 나타나면서, 시장 외연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소송 위험 노출도와 위험 인식 차이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상장기업 및 특정 업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반면, 중소기업의 가입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과 필요성 인식 부족으로 가입률이 낮지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규제 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잠재적 수요는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표 III-1〉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단위: 원)

구분	A	B	C	D	E	F	G
보상한도	950억	500억	500억	500억	150억	300억	300억
보험료	105억	N.A.	N.A.	N.A.	N.A.	N.A.	2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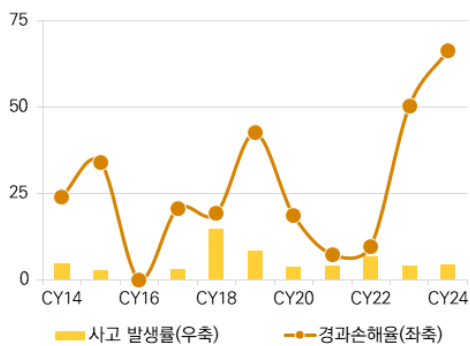
주: 금융지주회사의 공시자료(전자공시시스템 DART(2024))를 기초로 작성함

○ 보험회사 간 위험평가 및 인수역량 차이가 시장 내 보험계약 조건 편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지배구조·내부통제 등 정성적 평가 비중이 높아 보험회사별 언더라이팅 수준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동일 위험군에서도 보험료와 담보조건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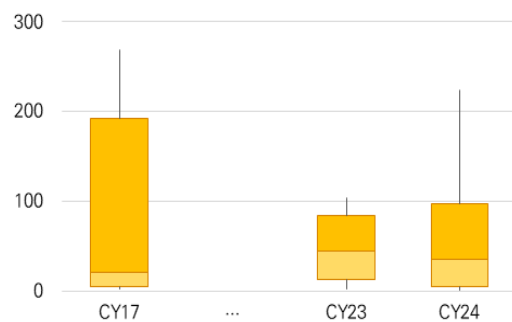
〈그림 III-5〉 임원배상책임보험 사고 발생 빈도 및 손해율 〈그림 III-6〉 연도별·회사별 임원배상책임보험 손해율 분포

(단위: %)



주: 2024년 초회보험료 기준임
자료: 보험회사

(단위: %)



주: 보험회사별 경과손해율 분포임
자료: 보험개발원, 각 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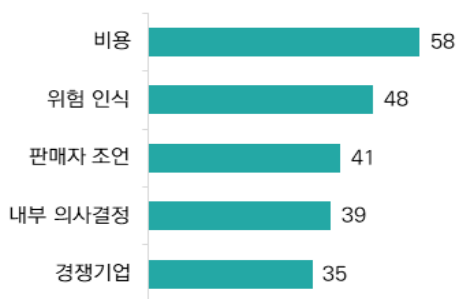
IV

시장전망과 주요과제

1. 시장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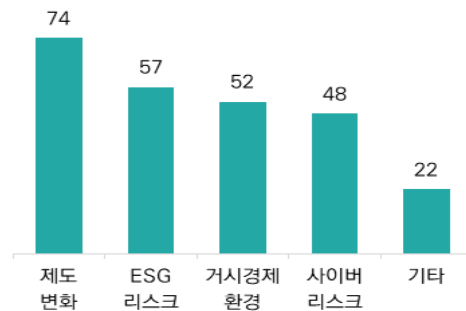
-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선택적 비용이 아닌 핵심 리스크관리 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그간 상당수 기업은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비용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제도 및 경영환경의 변화는 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중대재해, 정보보호 사고, ESG 관련 분쟁 등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 인식됨에 따라, 임원배상책임보험은 내부통제체계를 보완하고 지배구조를 제고하는 장치로 활용될 가능성이 큼
- 특히,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이사·임원의 소송 리스크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소송 가능성의 확대와 함께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책임 부담이 강화되면서, 경영진에 대한 책임 보호 장치로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은 한층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V-1〉 임원배상책임보험 구매 시 고려 요소 (단위: %)



주: D&O 보험 구매 시 고려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자료: Willis Towers Watson(2025)

〈그림 IV-2〉 향후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영향 요인 (단위: %)



주: D&O 시장의 영향 요인에 대한 24개국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자료: Global Insurance Law Connect(2025)

○ 한편, 주요 상장기업의 상당수가 이미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 신규 가입 확대를 통한 양적 성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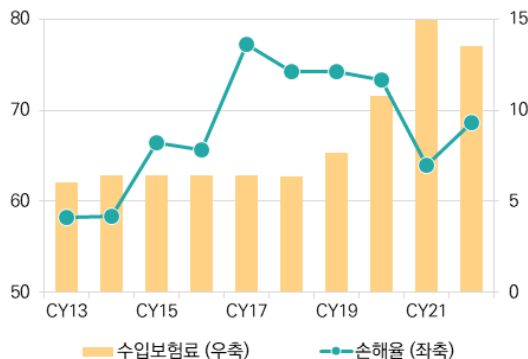
- 반면, 책임 범위 확대에 따라 보장한도 증액, 방어비용 선지급 구조 강화, 주주 간 분쟁 담보 범위 명확화 등 계약 구조의 질적 재설계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은 가입률 확대보다는 보장한도 증액과 보장담보 확장 등 보장수준 고도화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음
 - 보장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아, 책임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보장수준 강화 요구는 증가할 것임
- 한편, 산업안전, 개인정보보호 책임 등 법적 책임 확대가 잠재 수요를 자극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상장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중견·비상장기업으로 수요 기반이 점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음

○ 한편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손해 발생과 확정 사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Long-Tail 특성을 가지는 상품으로,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장기 책임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교한 손해 예측과 리스크관리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
- 해외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은 손해율 변동에 따라 경성시장(Hard market)과 연성시장(Soft market)이 반복되는 보험사이클을 보여 왔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 조정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함
 - 손해율 상승기에는 보험료 인상, 인수기준 강화, 보장축소 등 경성시장이 형성되고, 손해율 개선과 자본 유입이 이루어지면 경쟁심화와 인수조건 완화가 나타나는 연성시장으로 전환되는 구조임
 -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2010년대 중반 이후 보험회사 간 과잉경쟁, 집단소송 증가로 2017~2019년 사이 손해율이 악화되었고, 2020년 경성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수익성을 회복하기 시작함

〈그림 IV-3〉 미국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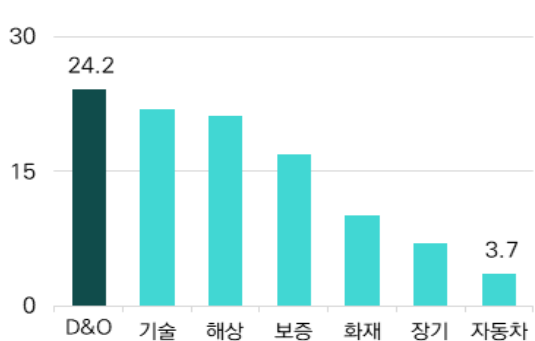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



주: Loss & DCC(Defense and Cost Containment) Ratio
자료: Fitch Ratings(2023)

〈그림 IV-4〉 손해보험 주요 상품의 손해율 변동성

(단위: %)



주: CY19~CY24 기간 중 보험종목별 경과손해율의 표준편차임
자료: 보험개발원, 각 연호

2. 주요 과제

가. 보험회사 경영과제

-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이 가입 확대 중심의 양적 성장 단계에서 보장수준 고도화 중심의 질적 성장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상품경쟁력 강화가 요구됨
 - 상장기업의 상당수가 가입하고 있는 시장구조에서는 매출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장 내용, 위험평가, 서비스 역량 등 질적 요소 중심의 경쟁이 중요함
 - 책임 범위 확대에 대응하여 보장한도 증액, 방어비용 선지급 구조 강화, 주주 간 분쟁 담보 범위 명확화 등 계약 구조 재설계가 필요함
 - 일본의 경우 상장기업 가입률이 90% 이상에 이르면서 신규 고객 확보가 어려워지자, 손보재팬은 보장범위 차별화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¹⁾

- 기업 및 산업별 특성, 독립이사와 경영진의 책임 수준 및 경영 관여도 차이를 고려한 보장 구조 정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산업별로 ESG, 사이버 리스크, 내부통제 실패 등 비재무적 책임 위험에 노출도가 상이하므로,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담보 설계가 요구됨
 -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상품 개발과 기업 규모·위험 수준에 따른 탄력적 인수 정책을 통해 획일적 보장 구조에서 벗어나 시장 저변 확대를 모색할 수 있음
 - 사외이사 전용 보장한도 설정, 방어비용 선지급 구조 명확화 등은 책임 강화 환경에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 출현으로 임원의 책임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기능을 강화하여 위험선별 중심의 사업모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경기, 자본시장, 소송 환경 변화에 민감한 순환적 특성을 지니므로, 단기 손해율에 기반한 가격경쟁보다는 장기리스크 관점의 언더라이팅이 중요함
 - 재무정보 중심의 평가에서 나아가 내부통제 수준, ESG 관리 체계, 사이버 대응 역량 등 비재무 위험요소를 반영한 정교한 평가모형 구축이 요구됨

1) 日本經濟新聞(2025. 11. 11.), “損保ジャパン、役員賠償補償の範囲拡大・株主提案への対応費用も”

- 향후 소송 환경 변화와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손해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여, 책임 리스크 데이터 축적, 손해율 예측 모형 고도화, 사후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청구기준(Claims-made) 보상 구조에 따른 보장공백과 피보험자 보호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약관 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 연장보고기간(Extended Reporting Period) 설정 등을 통해 계약 종료 이후 제기되는 청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특정 임원의 고지의무 위반이 전체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하여, '책임 분리'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나. 정책과제

- 임원배상책임보험이 기업지배구조 개선 장치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시제도의 정교화가 요구됨
- 감독당국은 지배구조 공시와의 연계를 통해 임원배상책임보험이 형식적 가입을 넘어 기업의 실질적 리스크관리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에 대해 보험 활용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장한도·자기부담금·주요 담보조건 등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음
 - 해외에서는 한도 및 부담 구조까지 공시하는 사례도 존재하나, 과도한 공시는 소송 유인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요구됨
- 상법 개정에 따른 책임 확대를 고려할 때,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실질적 보장수준 확보를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수 있음
- 특히 독립이사 보호를 위한 최소 보장한도 설정 여부는 정책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가입 의무화 여부는 시장 자율성과 책임 유인의 균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책임 회피 수단이 아니라 합리적 경영판단을 지원하는 장치로 작동하도록 유인설계를 병행해야 함
- 자기부담금(Retention) 설정, 위험기반 보험료 차등화 등을 통해 경영진의 책임의식을 유지하고, 보험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중견·중소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시장 인프라 구축도 요구됨
 - 책임 리스크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과 인식 부족으로 활용이 제한되고 있어, 표준약관 마련, 정보 제공 강화, 상품 단순화 등을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특정 기업군에 집중된 시장구조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장기 책임보험 특성을 반영한 감독 및 건전성 관리 체계의 지속적인 정교화가 필요함
 - Long-Tail 리스크가 자본규제와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준비금 평가 체계와 리스크관리 기준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강준원(202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제한 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검토」, 『상사법연구』, 42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 각 연호
- 김배정(2024), 『D&O보험과 회사보상계약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법학원
- 김원기(2000),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유에 대한 비교연구」, 『보험개발연구』, 30권
- 박은빈(2024), 「글로벌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KCGS Report』,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보험개발원(2025), 『국내 배상책임보험 활성화 방안』, CEO Report
-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각 연호
-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상장회사협의회(2005), 「주권상장법인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월간상장』
- 서정(2007), 「임원배상책임보험」, 『민사판례연구』
- 양희석(2024),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통지조항: 기업보험성 및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보험법연구』, 18권
- 최병규(1999),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학회지』, 54권
- 홍장희·김지정(2020), 「임원배상책임보험과 정황통지의 해석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14권
- 홍진희(2007),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법적 성격」, 『민사법연구』, 15권
- 山越誠寺(2023), “先端的D&O保険の実効性と限界, 保険毎日新聞社”
- Baker, T. and Griffith, S.(2007), “Predicting corporate governance risk: evidence from the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market”,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74(2)
- Bhuiyan, M. B. U., Ahmad, F., Wu, J. and Habib, A.(2025),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48(1)

- Boubakri, N. and Bouslimi, L.(2016),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and analyst forecast properties”, *Finance Research Letters*, 19
- Boyer, M. M. and Stern, L.H.(2014), “D&O insurance and IPO performance: what can we learn from insurers?”,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23(4)
- Bushman, R. M. and Smith, A. J.(2001), “Financial accounting informa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32 Nos 1–3, pp. 237~333
- Core, J. E.(2000), “The directors’ and officers’ insurance premium: an outside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corporate governance”,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16(2)
- _____ (1997), “On the corporate demand for Directors’ and Officers’ insurance”,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4(1)
- Diligent Market Intelligence(2026), *Shareholder Activism Annual Review 2026*
- Donelson, D. C., Hopkins, J. J. and Yust, C. G.(2018), “The cost of disclosure regulation: evidence from D&O insurance and nonmeritorious securities litigation”,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23(2)
- Donelson, D. C., Tori, E. and Yust, C.G.(2021), “The Effects of Independent Director Litigation Risk”,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9(2)
- Dudley, R.(2019), “The extortion economy: how insurance companies are fuelling a rise in ransomware attacks”, *ProPublica*
- Fitch Ratings(2023), “U.S.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Market Update”
- Global Insurance Law Connect(2025), “D&O Trends 2025”
- Griffith, S.J.(2006), “Uncovering a gatekeeper: why the SEC should mandate disclosure of details concerning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policies”,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54(5)
- Holmstrom, B.(1979), “Moral hazard and observability”,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10(1)
- Hu, Y. and Fang, J.(2022), “Peer effects in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evidence from China”, *Finance Research Letters*, 47
- Institute of Directors(2024), “D&O Insurance: Preparing for the Tailwinds”
- Kalelkar, R. and Nwaeze, E. T.(2015),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implications of abnormal coverage”,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 Finance*, 30

- Kaplan, M. and Harrison, R.(1993), “Defusing the director liability crisis: the strategic management of legal threats”, *Organization Science*, 4
- Lai, Y. H. and Tai, V. W.(2019), “Managerial overconfidence and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Pacific-Basin Finance Journal*, 57
- Liao, Y. P. and Li, K. F.(2017), “Does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induce bank risk-taking? Evidence from Taiwan”,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46(1)
- Lin, C., Officer, M.S. and Zou, H.(2011),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and acquisition outcom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02(3)
- Lin, C., Officer, M.S., Wang, R. and Zou, H.(2013),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and loan spread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10(1)
- OECD(2026), “Trends in AI Incidents and Hazards Reported by the Media”
- O’Sullivan, N.(1997), “Insuring the agents: the role of Directors’ and Officers’ insurance in corporate governance”,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4(3)
- Parchomovsky, G. and Siegelman, P.(2022), “Third-party moral hazard and the problem of insurance externalities”,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51(1)
- VMR(2025),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Market Size, Potential, Market Share & Forecast 2033”
- Weill, R.(2014), “Exodus: structuring redemption of captives”, *Cardozo Law Review*, 36
- Willis Towers Watson(2025), “Global Directors’ and Officers’ Survey”
- _____ (2020),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전자공시스템 DART,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 보험회사별 임원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 비교

A 社	B 社	C 社
<p>제**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②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보험자가 제19조의 ①의 1.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조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얻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가 제19조의 ①의 2.의 절차를 취하는 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3.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방어비용(이하 「방어비용」이라 합니다.) 4.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가 제21조의 ②, ③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p>제**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은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피보험자가 제2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2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상 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 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31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p>1. 보상하는 손해</p> <p>보험자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따라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최초로 제기되고 또한 이 보험의 조건에 따라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한 다음의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보상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경영배상책임 <ol style="list-style-type: none"> (i) 개인 <p>보험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각 개인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p> (ii) 외부법인이사 <p>보험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각 외부 법인 이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p> (iii) 피보험회사 보상 <p>피보험회사가 부당행위로 인하여 개인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지불한 경우, 보험자는 그 지불한 손해액을 피보험회사에 보상합니다.</p> 1.2. 피보험회사의 유가증권 관련 손해배상청구 <p>보험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각 피보험회사가 입은 유가증권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기인된 손해를 보상합니다.</p>

저자약력

김동겸 연구위원 / 경영학 박사

CEO Report 2026-01호

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의 과제

발행일 2026년 3월

발행인 김헌수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원센티널빌딩

인쇄소 경성문화사

ISBN 979-11-93021-96-5

